

충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

제정 2015. 11. 03.

개정 2018. 02. 19.

개정 2019. 06. 11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충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(이하 “지식재산권규정”이라 한다)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교가 승계한 후 지식재산권의 취득·처분·관리·보상 등 추진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.

제3조(신고 및 출원) ① 교직원 등은 지식재산권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다음 각 호의 직무발명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외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제4호의 해외출원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직무발명신고서 : 제1호 서식
2. 권리승계합의서 : 제2호 서식
3. 특허정보 요약문 : 제3호 서식
4. 해외출원신청서 : 제4호 서식

② 산학협력단은 접수된 제1항의 직무발명 신고서류를 검토한 후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특허취득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신고자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교직원 등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산학협력단과 협약한 전담특허사무소를 선택한 후 직무발명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직무 발명과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중 기술 분야가 없는 경우
2. 공동 권리 기관에서 특허사무소를 지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
3.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비 전담 특허사무소 지정 사유서가 첨부된 경우

제4조(지식재산권 평가) ① 지식재산권규정 제18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

로 의결한다.

③ 지식재산권 평가위원은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발명기술평가표(별지 제5호 서식)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식재산권 관련비용) ① 교직원 등이 신고한 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기로 결정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지식재산권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.

구분	S 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 이하
국내	최대 100% 지원			지원 없음
해외, PCT 국제출원	PCT(전액지원) 및 개별국 1개국(전액지원)	PCT(전액지원) 또는 개별국 1개국(전액지원)	지원 없음	
제3자와의 공동출원	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(단,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)			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연구과제 결과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관련비용은 연구과제 연구비로 계상하여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, 지식재산권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정부 고시율에 의해 간접비를 징수하는 과제는 제외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연구과제 연구비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④ 교직원 등이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과 협약한 전담특허사무소 이외의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임수수료는 충남대학교 위임수가표의 70%를 지급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지식재산권 제반비용에는 우선심사 신청,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. 다만, 지식재산권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우수기술은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⑥ PCT 국제출원 및 해외특허출원비용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.

⑦ 개인명의로의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승계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, 발명자가 기 납부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

⑧ 특허출원, 등록 및 유지와 관련하여 본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는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6조(전담특허사무소의 운영)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

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전담특허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담특허사무소의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.

제7조(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) ①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술이전 총 금액에서 지식재산권관리비용,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 및 국가기관에 납부한 기술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% 범위 내에서 기여도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세부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② 기술이전 기여자의 기여도 평가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8조(지식재산권 유지)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의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[제1호 서식]

직 무 발 명 신 고 서

발 명 자	소 속 (학 과)	OO 대학 OO 학과	연 락 처 (내 선) (휴대폰)		
	성 명		이 메 일		
구 분 / 영 역	☐ 특허 ☐ 실용신안 ☐ 디자인 ☐ 상표 ☐ 컴퓨터프로그램 ☐ 노하우 ☐ 품종 ☐ 기타 기술				
출원 구분	☐ 신규출원 ☐ 우선권주장(원출원번호 :) ☐ 분할출원(원출원번호 :)				
발명의 명칭					
기 술 분 야	☐ BT ☐ CT ☐ ET ☐ IT ☐ NT ☐ ST ☐ 기타기술				
발명자 현황	성 명	영 문 명	소 속	지분율(%)	연 락 처 (H.P)
대표발명자1					
발 명 자 2					
발 명 자 3					
발 명 자 4					
관련연구과제					
고유과제번호			부 처 명	예) 미래창조과학부, 교육부 등	
연구과제명					
연구사업명			연 구 기 간	0000.00.00~0000.00.00(00개월)	
연구관리전문기관	예) 한국연구재단		주 관 기 관		
특허비용부담	☐ 산학협력단 지원 ☐ 연구과제에서 계상 ☐ 기타()				
기타 진행 여부	☐ 출원시 심사청구 ☐ 심사 미청구 ☐ 청구범위제출유예(가출원) ☐ 우선심사 신청				
발명의 공개여부	☐ 논문 ☐ 학술지 게재 ☐ 연구보고서 ☐ 기타 공개날짜 : ※웹사이트 공개일, 학술대회발표일 중 먼저 공개된 날짜 입력				
공동출원	기관명	담당자	지분율(%)	연락처	비용부담
※ 공동출원사유 :					
전담 특허사무소지정 (분야별 선택)	화학/에너지/자원	생명/바이오/의료	전기/전자/정보통신	기계/건축/환경/소재	비전담사무소 이용 (사무소명)
	☐ 오암(이성렬) ☐ 타임(김원준) ☐ 플러스(권오식)	☐ 그린(최규환) ☐ 주원(나영민)	☐ 5T(김재문)	☐ 지율(박진호)	☐ 직무 발명 기술 분야가 없음 ☐ 공동 권리 기관 특허사무소 지정 ☐ 사유서 제출
수요기업(예상)	선택적 기제사항으로 만드시 기제할 필요는 없음				

위와 같은 연구결과물(지식재산권)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심의하고자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20 년 월 일

대표발명자 (작성자)

(인)

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

[제2호 서식]

권리승계합의서

양수인	명칭	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		
	주소	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		
양도인은 아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(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저작권 등)을 충남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.				
다 음				
발명의 명칭				
년 월 일				
양도인	성명	홍길동 ㉠	주민등록번호	000000-111111
	주소	※ 인감상의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	성명	이도령 ㉠	주민등록번호	111111-222222
	주소			
	성명	㉠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성명	㉠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
※ 양도인 칸에는 충남대에 권리를 양도하는 모든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,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특허정보 요약문

발명의 명칭 (영문)	
발명개요	○ 발명의 목적 : ※발명의 동기, 필요성, 종래기술의 문제점 등 왜 본 발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 ○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: ※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(어떠한 기술로) 해결하였는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○ 발명의 효과 : ※본 발명을 구현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(무엇이 얼마나 좋아졌는지)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 ○ 대표적인 청구범위 : ※특허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항, 기술적인 특징사항을 간략하게 기재
관련 도면	※도면, 간단한 스케치, 사진 또는 flow chart 등 개수에 제한 없이 기재 가능
응용분야	
발명의 활용가능 성	
기술의 독창성/ 우수성	

[제4호 서식]

해 외 출 원 신 청 서

발명자	소 속		연 락 처	연 구 실 전화번호	(내선)	휴 대 폰		
	성 명			이 메 일				
유형	☐ 특허권, ☐ 실용신안권, ☐ 기타()				기술분야	☐ BT ☐ CT ☐ ET ☐ IT ☐ NT ☐ ST ☐ 기타()		
발명 현황	출원 진행국가	☐ PCT출원 ☐ 미국 ☐ 유럽 ☐ 중국 ☐ 일본 ☐ 기타()						
	발 명 의 명 칭							
	해당건 기초 국내 특허 및 PCT 출원	국내 출원번호				국내 출원일		
		PCT 출원번호				PCT 출원일		
	기술권리 화 진행 사항	☐ 연구성과물, ☐ 국내출원·심사중, ☐ 국내 등록완료, ☐ 기타 ()						
	논문·학회 발표 현황	발표 년월일						
논문·학회명								
해외 출원 발명자 현황	구 분	성 명	소 속	지분율 (%)	주민(법인) 등록번호/영문주소			
	발명자 1	한글:			주민번호:			
		영문:			영문주소:			
	발명자 2	한글:			주민번호:			
		영문:			영문주소:			
	발명자 3	한글:			주민번호:			
영문:				영문주소:				
발명자 4	한글:			주민번호:				
	영문:			영문주소:				
관련 연구 과제	과제 번호				부 처 명			
	연구 과제명							
	연구 사업명				주관기관			
	연구비 관리전문기관				연구 기간			
기 타	특허비용 부담	☐ 외부기관 / 공동출원인 전액납부 ☐ 산학협력단 지원 ☐ 연구과제에서 계상(금액 : 원) ☐ 기타()						
	공동출원인		지분율(%)		담당자 연락처			
위임 특허사무소		충남대학교 협약 전담특허사무소 지정						

위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충남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해외출원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대표발명자(작성자) :

㉠

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

발명 기술 평가표

관리번호		발명자	
발명의 명칭			

본인은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, 본 발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,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소 속 :

성 명 : (인)

20 년 월 일

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평가지표

구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점수
특허성	권리특가능성	① 새로운 개념 또는 선행기술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기술로 특허등록 가능성 매우 높다. ② 선행기술과 구성 또는 효과의 차이가 있어 특허등록 가능하다.. ③ 2개 이상의 선행기술의 조합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. ④ 1개의 선행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 가능하여 특허등록 가능성 낮다.	
기술성	기술완성도	①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의 테스트 결과, 기술 실현성이 입증된 기술이다. ②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중에 있는 기술이다. ③ 연구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기술이다. ④ 연구개발 아이디어 단계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기술이다.	
	기술의우수성	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기본 발명이다. ② 기존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 또는 개선, 개량의 정도가 큰 발명이다. ③ 개량의 정도가 보통인 발명이다. ④ 개량의 정도가 다른 변형예(실시예)를 제시한 수준 또는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발명이다.	
	기술동향부합성	①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며, 최신의 선도기술이다. ②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지만 경쟁 또는 유사기술이 존재한다. ③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지만 대체기술이 존재한다. ④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배치되기는 하나, 활용을 기대할 수는 있다.	
	기술수명	① 도입기의 기술로 상당기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다. ② 성장기의 기술로 활용도가 검증되고 있다. ③ 성숙기의 기술로 활용성이 약해지고 있다. ④ 쇠퇴기의 기술이지만 활용도가 남아 있기는 하나 제한적이다.	
시장성	상용화가능성	①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다. ② 관련기술이 상용화 진행 중에 있다. ③ 관련시장이나 기술의 추이를 볼 때, 향후 몇 년 이내에 상용화 될 가능성이 크다. ④ 관련시장이나 기술의 추이를 볼 때,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상용화 될 가능성이 있다.	
	산업적파급효과	①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,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. ②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고,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비교적 큰 편이다. ③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지만,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작은편이다. ④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비교적 한정적이고,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작은 편이다.	
	시장의성장성	① 시장이 성장기에 있다. ② 시장이 도입기 또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드는 상태이다. ③ 시장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상태 또는 성숙기에 있다. ④ 시장이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상태이거나 쇠퇴기에 있다.	
	기술수요성	①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그 수요는 충족되어 있지 않다. ②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그 수요의 충족이 다소 미흡하다. ③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. ④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적거나 파악되어 있지 않다.	
	시장진입용이성	① 법·제도적 장려요인이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하거나 신규시장인 관계로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. ② 향후 법·제도에 장려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. ③ 법·제도적 장려 내지 제약요인이 없다. ④ 진입장벽이 있으며 법·규제 제약요인이 많고 승인이 까다로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.	

※ 점수산정표 : ①은 10점, ②는 8점, ③은 6점, ④는 4점

평가의견

특허성	
기술성	
시장성	
기 타	

※ 대상 발명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

평가등급

심사등급 (해당등급에 ‘○’ 표시)			
90점 ~ 100점	80점 ~ 89점	70점 ~ 79점	70점 미만
S	A	B	C